

제9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내지 18조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평가사의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한국에너지공단 이 사 장

다 음

1. 시행일정

공고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원서접수	시행일	합격 (예정)자 발표	응시자격 증빙자료 제출	제1차 합격자 발표	제2차 원서접수	시행일	합격자 발표
310(금)	4.10(목) ~ 4.28(금)	7.1(토)	7.14(금)	7.14(금) ~ 7.26(수)	8.7(월)	8.7(월) ~ 8.18(금)	10.21(토)	12.8(금)
<유의사항> * 원서접수는 해당 접수기간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접수페이지(http://bea.energy.or.kr)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 합격자는 해당 발표일 10:00부터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장소는 원서접수 시 선착순으로 선택가능 합니다. *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및 과목면제를 증명하는 서류(졸업(학위)증명서, 정해진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를 제출해야하며,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우편, 방문)하지 않으면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감염병 위기경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행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원서접수

○ 원서접수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http://bea.energy.or.kr>)

○ 접수 시 준비서류 : 증명사진 스캔 1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여권용, 용량 500KB 이하 JPG파일

구분	내용
접수 가능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상반신 정면, 탈모, 무 배경
접수 불가능사진	스냅 사진, 선글라스, 스티커 사진, 측면 사진, 모자착용, 혼란한 배경사진, 기타 신분확인이 불가능한 사진

○ 검정수수료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68,000원	89,000원

○ 접수 시 유의사항

- 면제과목 여부는 수험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제1차 시험 원서 접수 시에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선택이나 변경, 취소가 불가능 함
- 원서접수는 해당 접수기간 첫날 10: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http://bea.energy.or.kr>)을 통하여 가능
- 원서 접수 시에 입력한 개인정보가 시험당일 신분증과 상이할 경우 시험응시가 불가능 함

3. 시험장소

○ 제1차 시험 : 서울 지역 1개소

○ 제2차 시험 : 서울 지역 1개소

* 구체적 시험장소는 제1·2차 시험 접수 시 안내

* 접수인원 증가 시 서울지역 예비시험장 마련

4. 응시자격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응시자격은 붙임1. 참조
- 응시자격 관련 문의사항은 접수처(02-6362-2013)로 문의 또는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누리집(<http://bea.energy.or.kr>)의 Q&A메뉴 이용

5. 검정방법 및 면제사항

○ 검정방법

구 분	시험과목	문항수	검정방법	시험 시간(분)	입실시간
제1차 시험	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20	4지선다 선택형	120	시험 당일 09:30까지 입실
	건축환경계획	20			
	건축설비시스템	20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평가	20			
제2차 시험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평가	10내외	기입형 서술형 계산형	150	

- * 시험시간은 면제과목이 있는 경우 면제 1과목당 30분씩 감소 함
- * 관련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면제과목

구 분		면제 과목 (제1차 시험)	유의사항
건축사		건축환경계획	면제과목은 수험자 본인이 선택가능
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건축설비시스템	
	발송배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 면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은 응시자격 증빙자료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원서접수 내용과 다를 경우 해당시험 합격을 무효로 함
- * 건축사와 해당 기술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2과목 동시면제 가능함
- * 면제과목은 원서접수 이후 변경 불가함

○ 제8회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9회 제1차 시험이 면제됨

6. 합격결정기준

- 제1차 시험 : 100점 만점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면제과목이 있는 경우 해당면제과목을 제외한 후 평균점수 산정
- 제2차 시험 : 100점 만점기준 60점 이상 득점한 자

7. 응시자격 제출서류

- 대상 : 제1차 시험 합격 예정자에 한함
- 접수기간 : 7.14.(금)~7.26.(수)
 - 증빙서류 : 졸업(학위)증명서 원본, 자격증사본,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중 해당 서류 제출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1차 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 시 공지
- 유의사항
 - 제1차 시험 합격 예정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기한 내(13일간)에 제출
 - 지정된 기간 내에 증빙서류 미제출, 접수된 내용의 허위작성, 위조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불합격 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자격, 면제과목 및 경력 산정 기준일 : 제1차 시험 시행일('23.7.1.)

8. 응시수수료 반환기준

반환기준	반환율: 100%	반환율: 50%	반환불가
제1차 시험	4월10일 10시00분00초부터 4월28일 23시59분59초까지	4월29일 00시00분00초부터 6월26일 23시59분59초까지	6월27일 00시00분00초부터
제2차 시험	8월7일 10시00분00초부터 8월18일 23시59분59초까지	8월19일 00시00분00초부터 10월16일 23시59분59초까지	10월17일 00시00분00초부터

- * 인터넷 원서접수 누리집에 응시 취소신청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 기간 외 환불관련 규정은 붙임5. 수수료 환불 관련 안내사항 참조

9. 사회적약자 편의제공 사항

-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과민성 대장(방광) 증후군 등은 원서접수 시 장애 여부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기입(편의요구사항이 없을 경우 미기입)
- 원서 접수 마감 후 14일 이내에 해당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51길 18 푸르지움빌딩 3F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담당자 앞
- 유형별 편의제공 가능사항 및 제출 증빙서류는 붙임3. 참조

10. 시험시행 당일 유의사항

- 입실시간(09시 30분) 미준수시 시험응시 불가
- 수험자는 시험시간의 1/2이상 경과한 이후에 최종 퇴실할 수 있음
-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 공학용계산기 등 지참
- 아래에 규정된 신분증 이외에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구분	규정 신분증
일반인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공무원증
군인	장교 및 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부대장 발행 신분확인 증명서(사병)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 제1차 시험의 답안카드는 검정색 컴퓨터용 싸인펜만 사용가능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책임임
- 제1차 시험의 답안카드의 답안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답안카드를 교체 또는 수정테이프를 통해 수정할 수 있음
 - * 수정테이프 외에 수정액, 스티커 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수정테이프 사용에 의한 답안전산 오류에 대한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 교체답안카드는 수험자가 직접 “X” 표시 후, 감독관이 회수함

- 제2차 시험 답안 작성은 검정색(black), 파랑색(blue)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연필, 기타 유색 필기구로 작성된 답안은 “0점”처리될 수 있음
 - *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임
- 제2차 시험 답안정정 시에는 정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
 - * 답안정정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음
-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리셋(초기화)하여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 사항을 위반 시 퇴실조치 함
 -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수험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의 책임으로 함
- 부정행위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자격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3년 이내에서 검정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리 함
-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각종 스마트 전자기기 등을 사용할 수 없음
 - * 시험도중 관련 위 장비를 휴대하거나 사용이 적발될 경우 실제 부정행위 의도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 무효처리 및 퇴실 조치 될 수 있음
-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가 불가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 합격자는 발표일 10시부터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 (<http://bea.energy.or.kr>)에서 확인 가능

11. 결격사유

- 시험 최종합격 발표일(12.08) 기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31조 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제31조 2항 각호(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자격시험 시행 1~2개월 전 감염병 위기경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시험 시행일정 조정·취소 여부 등 시험에 관한 사항 공지(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or.kr>) 및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평가사홈페이지(<http://bea.energy.or.kr>)에 공지, 문자(접수자에 한함)를 통해 개별 안내 예정)
- * 공지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수험자는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원서접수 시 문자 수신 연락처 재확인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자격심의회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험일정 조정 및 취소 결정
- * 시험 전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시험 관련 내용 변경 가능
- ※ 수험자는 붙임4. 수험자 안내사항 및 시험 접수 후 별도 공지되는 안내에 따라 시험에 응시

13. 문의처

- 기타 문의사항은 접수처(02-6362-2013)로 문의 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http://bea.energy.or.kr>)의 Q&A메뉴 이용

- 붙임 1.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 기준
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출제범위
3. 사회적 약자 편의제공사항 및 증빙서류
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험자 안내 사항
5. 수수료 환불 관련 안내 사항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제12조제2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직무 분야 중 건설,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이하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 학과의 직무분야별 학과 중 건설,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 학과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관련학과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관련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관련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8.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9.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제1차 시험

시험과목	주요항목	출제범위
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령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및 효율 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등 관련 하위규정
	3. 에너지법	1. 에너지법령
	4. 건축법	1. 건축법령(총칙,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유지와 관 리,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건축설비 보칙)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련 하위규정
	5.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법규	1. 건축물 에너지 관련 법령·기준 등 (예 : 건축·설비 설계기준·표준시방서 등)
건축환경계획	1. 건축환경계획 개요	1. 건축환경계획 일반 2. Passive 건축계획 3. 건물에너지 해석
	2. 열환경계획	1. 건물 외피 계획 2. 단열과 보온 계획 3. 부위별 단열설계 4. 건물의 냉·난방 부하 5. 습기와 결로 6. 일조와 일사
	3. 공기환경계획	1. 환기의 분석 2. 환기와 통풍 3. 필요환기량 산정
	4. 빛환경계획	1. 빛환경 개념 2. 자연채광
	5. 그 밖에 건축환경 관련 계획	
건축설비시스템	1. 건축설비 관련 기초지식	1. 열역학 2. 유체역학 3. 열전달 기초 4. 건축설비 기초
	2. 건축 기계설비의 이해 및 응용	1. 열원설비 2. 냉난방·공조설비 3. 반송설비 4. 급탕설비
	3. 건축 전기설비 이해 및 응용	1. 전기의 기본사항 2. 전원·동력·자동제어 설비 3. 조명·배선·콘센트설비
	4. 건축 신재생에너지설비 이해 및 응용	1. 태양열·태양광시스템 2. 지열·풍력·연료전지시스템 등
	5. 그 밖에 건축 관련 설비시스템	
건물 에너지 효율설계 · 평가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3.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운영규정
	2. 건물 에너지효율설계 이해 및 응용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반(기준, 용어정의) 2.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권장사항 3. 단열재의 등급 분류 및 이해 4. 지역별 열관류율 기준 5. 열관류율 계산 및 응용 6. 냉난방 용량 계산 7. 에너지데이터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 업무 운영규정 등)
	3.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분야 도서 분석능력	1. 도면 등 설계도서 분석능력 2.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도면의 종류 및 이해
	4.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평가	

□ 제2차 시험

시험과목	주요항목	출제범위
건물 에너지효율설계 · 평가	1. 건물 에너지효율설계 및 평가 실무	1. 각종 건축물의 건축계획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단열, 온도, 습도, 결로방지, 기밀, 일사조절 등 열환경계획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공기환경계획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냉난방 부하계산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열역학, 열전달, 유체역학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열원설비 및 냉난방설비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공조설비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8. 전기의 기본 개념 및 변압기, 전동기, 조명설비 등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9.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연료전지 등)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0. 전기식, 전자식 자동제어 등 건물 에너지절약 시스템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1. 건축, 기계, 전기 도면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2.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조닝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3.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4.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기준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15. 에너지데이터 및 BEMS의 개념, 설치확인기준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 · 평가	

유형(장애 정도)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시각장애	중증 시각장애	- 시간 연장 1.7배 - 점자문제지 혹은 문제 음성파일 제공 - 답안지 대필 * 음성낭독을 위한 노트북은 수험자 지참	장애인 등록 증명서
	경증 시각장애	- 시간 연장 1.5배 -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 답안지 대필	
뇌병변 장애	중증 장애	- 시간 연장 1.5배 -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 답안지 대필	
	경증 장애	- 시간 연장 1.2배 -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 답안지 대필(필요시 소견서 제출)	
지체 장애	중증 상지(복합) 지체	- 시간 연장 1.5배 -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 답안지 대필	
	경증 상지(복합) 지체	- 시간 연장 1.2배 - 확대문제지(배율 협의조정) - 답안지 대필(필요시 소견서 제출)	
	하지 지체	-	
청각 장애	-	별도 시험안내자료 제공	의사 진단서
기타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지장이 있는 자	의사진단서 제출 시 별도 검토를 통해 지원	
	기타 (임산부 등 포함)	증상별 편의제공 별도 검토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험자 안내 사항

① 시험 당일 안내사항

- 수험장 입실 시 마스크 착용은 자율이며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 안내에 협조 바라며, 기타 호흡기 증상 등이 있을 시 반드시 수험장 운영인력에 도움요청
- － 발열, 호흡기증상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 수험자는 별도 격리 고사실에서 응시
 - * 시험 중 발열, 호흡기증상 등 발생 시 감독위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 격리 고사실로 이동 응시하며, 감독위원의 안내에 불응 시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 될 수 있음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시행일 기준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당일 수험자 이외의 외부인력의 수험장 출입 엄격히 통제, 보호자 등 동행인은 수험장 밖에서 대기

② 평상시(시험 전) 수험자 유의사항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
 - － 자주 손씻기, 눈코입 만지지 않기, 기침은 옷소매로, 마스크 착용 등
- 코로나19 감염증 유행국가 방문 자제

수수료 환불 관련 안내 사항

① 다음의 경우 응시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환불합니다.

1. 수수료를 과 납한 경우에는 과 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5.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
6.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 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 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 전액 환불 (국가(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발급한 확인서 필수 첨부)
7.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
8.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경찰서 확인서 등 첨부)